

전기공사기술자 경력관리업무 처리지침

2010. 12. 30

한 국 전 기 공 사 협 회

목 차

I. 총괄

1. 목적	2
2. 근거	2
3. 적용범위	2
4. 기술자경력관리업무 처리절차.....	2

II. 절차별 업무처리기준

1. 신청서접수	3
2. 전기공사업무경력의 인정.....	7
3. 참여사업 경력의 인정	12
4. 전기공사업무 경력의 변경인정	13
5. 서류의 보완.....	14
6. 경력수첩 발급(재발급) 및 교부	14
7. 이의·정정신청의 처리	16
8. 제증명서 발급	16
9. 경력수첩 취소	17
10. 자료의 보관	18
11. 수수료.....	18

I. 총괄

1. 목적

- 이 지침은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단체장이 전기공사기술자 경력관리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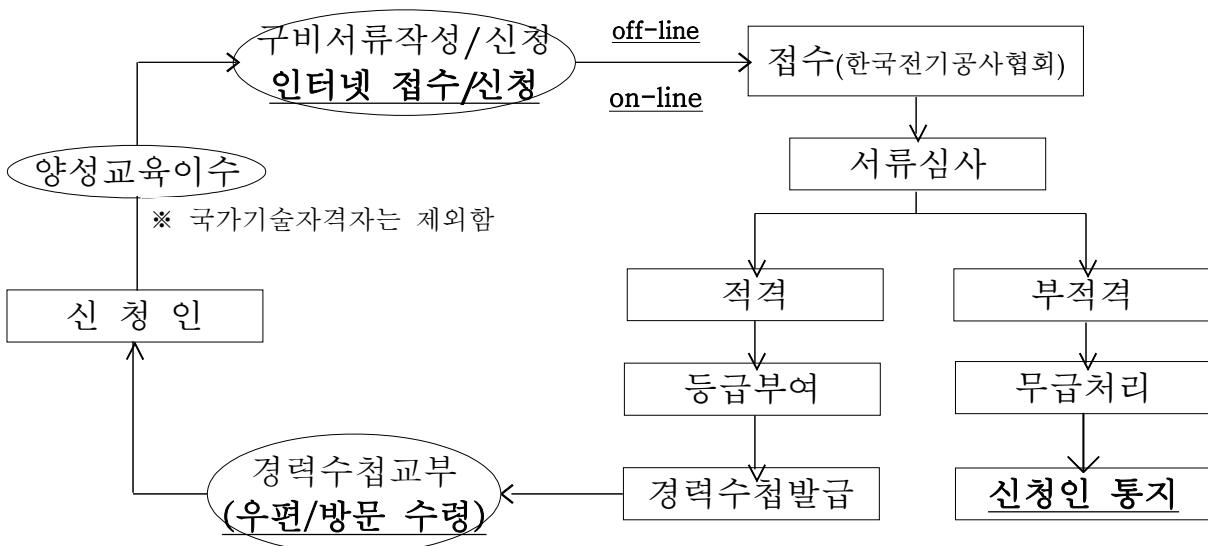
2. 근거

- 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2, 제32조제3항
-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2조의2, 제12조의4, 제15조제3항
-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의2
-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4조 내지 제17조 및 제35조

3. 적용범위

- 본 지침은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와 전기공사기술자의 수첩발급과 기술자의 경력을 관리하는 지정단체에 적용한다.

4. 기술자경력관리업무 처리 절차



Ⅱ. 절차별 업무처리기준

1. 신청서 접수

가. 접수서류

□ 국가기술자격자

- 기술자인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원본 대조 확인 함)
- 전기공사업무경력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 및 재직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학위증사본 또는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참여사업확인서(요령 별지 제8호서식) 및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재직회사의 해당사업 등록증 사본(설계, 감리, 안전관리, 소방전기) 등을
말하며 해당자에 한함)
-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 증명사진 2매

※ 전기공사관련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발송배전 - 전기응용 - 건축전기설비 - 철도신호 - 전기철도 - 산업계측제어 - 원자력발전 - 전기안전	- 전기	- 전기공사 - 전기 - 철도신호 - 전기철도 - 원자력	- 전기공사 - 전기 - 철도신호 - 전기철도	- 전기 - 철도전기신호

※ 등급인정 기준

등 급 구 분	인 정 기 준
특급기술자	○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자
고급기술자	○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 수행자 ○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 수행자 ○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전기공사업무 수행자
중급기술자	○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기공사업무 수행자 ○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 수행자 ○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 수행자
초급기술자	○ 기사 또는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기공사업무 수행자

□ 학·경력기술자

- 기술자인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 전기공사업무경력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 및 재직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전기관련학과 학위증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 참여사업확인서(요령 별지 제8호서식) 및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재직회사의 해당사업 등록증 사본(설계, 감리, 안전관리, 소방전기 등을
말하며 해당자에 한함)
-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 증명사진 2매

※ 전기관련학과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 전기과 - 발전과 - 송배전과 - 신호과(철도신호관련)	- 전기(공)학과	- 전기(공)학과

※ 학력자의 학력인정 범위

학사이상 학위 인정	전문학사 이상 학위 인정	고등학교 졸업 학력인정자
- 전기관련 학과 학사·석사·박사 졸업자 - 국내 또는 외국의 동등 수준 학력인정자 - 전체이수학점에서 전기 관련 학과목 비중 100분의 30이상인 자	- 전기관련 학과 전문학사 졸업자 - 고등전문학교 전기관련 학과 교육과정 이수자 - 전기관련학과 학사학위 과정 3년 이수자 - 국내 또는 외국의 동등 수준 학력인정자 - 전체이수학점에서 전기 관련 학과목 비중 100분의 30이상인 자	- 전기관련학과 고등학교 과정 졸업자 - 국가인정 전기분야 교육 기관 6개월 이상 교육 과정 이수자 - 4년대학 2년, 2년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1년 이상 교육과정 이수자 - 국내 또는 외국의 동등 수준 학력인정자

※ 등급인정 기준

등 급 구 분	인 정 기 준
초급기술자	○ 전기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취득 한 자 ○ 전기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기공사업무 수행자 ○ 전기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 후 4년 이상 전기공사업무 수행자

□ 경력기술자

- 기술자인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 전기공사업무경력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 및 재직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학위증사본 또는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참여사업확인서(요령 별지 제8호서식) 및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재직회사의 해당사업 등록증 사본(설계, 감리, 안전관리, 소방전기 등을 말하며 해당자에 한함)
-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 증명사진 2매

※ 등급인정 기준

등 급 구 분	인 정 기 준
초급기술자	○ 전기관련학과 외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후 4년 이상 전기공사업무 수행자 ○ 전기관련학과 외의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후 6년 이상 전기공사업무 수행자 ○ 전기관련학과 외의 고등학교이하 졸업한 후 10년 이상 전기공사업무 수행자

나 유의사항

- ☐ 재직증빙서류란 재직기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써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말하며, 모든 서류의 제출은 원본에 의한다.

(단,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증명서에 대하여는 인터넷 발급 및 전송기기(FAX)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증명서는 인정한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가입확인서

- 국세청이 발행한 소득금액 증명원과 원천징수영수증
- 관계 법령에 의거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경력관리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또는 상장법인이 발행한 재직(경력)증명서
- 협회가 발행한 기술자 선·해임확인서 또는 전기공사업경력확인서
- 공증기관이 공증한 재직사실확인서(1988년 7월 1일 이전 경력에 한하며, 재직했던 회사(전기공사업체에 한함)가 부도 또는 폐업되었다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 기타 재직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참여사업 증빙서류란 참여사업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써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말한다.

-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 전기공사실적증명서 사본
- 전기공사계약보증서 또는 하자보수보증서(공사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관계 법령에 의거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경력관리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전기공사 참여사업기간이 명시된 것에 한한다.)

- 건축물관리대장(건축물관리대장에 시공사 또는 건축주가 기재되어 있고 시공사 또는 건축주가 참여사업확인서를 발행한 경우에 한한다.)
- 건물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권보존등기자가 참여사업확인서를 발행한 경우에 한한다.)
- 기타 재직회사가 해당 전기공사를 수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 처리기준

- 신청서 접수시 신분증명서 등을 제시토록 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출된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의 누락여부, 기재사항의 기재오류 또는 누락여부 및 인장날인 누락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고 즉시 보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우편일 경우 우체국 소인일로부터 반영하며, 인터넷 접수시에는 문자메세지를 이용하여 보완을 요구함)에 신청자에게 보완토록 보완을 통지토록 하며, 보완사항을 경력관리시스템에 기록·관리하고 신청자가 보완 기간 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 제출된 서류에 의거 심사를 완료토록 한다.
- 처리예정일과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사전 동의에 의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이용으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및 주민등록초본을 생략할 수 있음.

※ 경력수첩의 우편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우편료는 신청인이 부담토록 한다.

2. 전기공사업무경력의 인정

가. 전기공사업무경력 인정기준

1) 경력기간의 100%를 전기공사업무경력으로 인정하는 경우

-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회사에서 전기공사의 시공 또는 시공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기간
- 외국 전기공사업체에 고용되어 전기공사의 시공 또는 시공관리업무를 하였을 경우
- 노동부고시에 의거 전기기능사 시험을 면제하는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자의 입상이전의 경력

-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된 자가 전기관련 상위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 이미 인정받은 경력과 인정기술자가 된 이후의 경력

2) 경력기간의 80%를 전기공사업무경력으로 인정하는 경우

- 전기공사관련분야에서 전기공사의 설계·감리·감독업무를 수행한 기간
(단, 재직입증서류에 설계업·감리업 등록증 사본과 해당 기술자 경력수첩 사본을 같이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전기직렬(공업직렬로 개명됨) 공무원으로써 전기시설관리 및 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기간
- 전기관련 교수·교사·강사 등으로 전기공사관련 교육업무를 수행한 기간
- 재해예방기술지도전문기관에서 전기공사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한 기간

3) 경력기간의 50%를 전기공사업무경력으로 인정하는 경우

- 전기공사 관련 해당분야에서 전기공사의 계획·시험·검사·유지관리·전기 안전관리·전기공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경우 관련분야 자격증 보유 또는 전기관련 학과를 이수한 자의 경력에 한함)
- 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전기분야 소방설비국가기술자격을 가지고 수행한 소방 설비의 전기공사 및 도난방지 시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기간
(단, 소방경력으로 인정된 기간은 제외)

4)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종학력 취득전 경력과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전 경력은 위 1) ~ 3)에서 정한 경력의 50%를 적용한다.

나. 처리기준

- 전기공사업무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21의3호서식) 및 재직입증서류의 비교·검토를 통해 전기공사업무경력확인서의 경력기간과 재직입증서류의 경력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재직입증서류(국민연금가입확인서 등)의 재직기간범위 안에 있는 경력확인서의 경력기간을 인정한다.
- 설계, 감리, 전기안전관리, 소방전기설비시공(전기분야) 업무로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설계업, 감리업, 안전관리대행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재직회사의 관련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과 관련된 자격수첩사본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전기관련 경력관리기관이 발행한 경력확인서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동일회사에서 전기공사업무와 전기공사업무가 아닌 업무를 같이 수행한 경우 전기공사업무가 아닌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부적합 경력으로 처리한다.
- 동일회사에서 설계·감리·감독 등의 업무와 기타(유지관리 등)업무를 같이 수행한 경우(경력인정기준이 서로 다른 업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함) 전기공사업무경력확인서(규칙 제21의3호서식)의 뒷면의 담당 업무별로 경력인정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경력확인서 뒷면의 세부 경력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세부경력을 기재하게 하거나, 참여사업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단 참여사업의 인정은 별지의 참여사업 확인서 제출에 의하여만 인정토록 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상장회사가 발행하는 재직(경력)증명서 및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경력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만으로 전기공사업무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전기공사업무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21의3호 서식)의 회사 확인날인은 생략 할 수 있다.
- 비 전기공사업체에서 유지관리 업무에 대하여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전기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했던 회사의 전기설비 시설물(수변전 설비 존치여부 확인 가능자료, 건축물관리대장, 전기설계도서 등)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인정 함.
- 전문(산업)학사 이상의 학력자로서 전기관련학과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성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게 하여 별표1의 전기관련 학과목의 학점이 전체 이수학점의 30%이상인 경우 전기관련 학력자로 인정한다.

○ 외국의 경력.자격. 학력의 인정 기준

1. 외국의 학력

가) 아포스티유 가입국의 경우 (별표 3 아포스티유 협약가입국 현황)

※ 아포스티유 협약이란

협약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 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인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협약

- 우리나라에 대한 발효 : 2007. 7. 14

졸업증명서 원본과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이 협약에 의해 발행한 아포스티유 확인서

- 제출서류 : 아포스티유 확인서, 졸업증명서 원본, 한국어 번역공증서
(다만, 전공학과가 전기관련학과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전기관련학과 인정을 위한 성적증명서, 번역공증)

나)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인 경우

졸업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서 재외공관공증
법령에 의해 한국어로 번역 공증(공관의 공증)을 받은 졸업증명서
원본

- 제출서류 : 졸업증명서 원본, 공관의 공증서, 한국어 번역공증서

2. 외국의 경력

가) 아포스티유 가입국의 경우

외국회사(외국의 법령에 의해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국내에 지사
또는 출장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

- 경력확인서(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제4의2 제4호 가항의
업무가 포함된 것에 한함)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 제출서류 : 경력확인서, 공관의 공증서, 한국어번역공증서

- 전기관련 기능사보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전기기능사로 자격을 변경한
경우에 인정한다. 단, 전기관련 기능사보 자격만으로 경력을 신고하는 경우
전기공사업무경력이 7년 이상일 경우 초급기술자로만 한정하여 인정한다.
- 1974년 10월 16일 개정된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7에 의거 종전의
전기공사업법시행령(1977.11.19. 이전의 것을 말한다)에 의한 갑류기술자는
전기공사기사로, 을류 및 병류기술자는 전기공사산업기사로 자격을 변경한
경우 인정한다.
- 사병으로서 군 복무중의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특기가 기재된
병적증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주특기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복무기간의
50%를 전기공사업무 경력으로 인정하며, 전기공사 업무경력확인서를
군부대(상급기관을 포함)로부터 확인 받아 제출한 경우 50%를 전기공사
업무 경력으로 인정한다.

<전기공사업무경력이 인정되는 주특기>

육 군		공 군		해 군	
주특기	주특기명	주특기	주특기명	주특기	주특기명
1627	전공	553*0	전력운영	19-3	시설공병
1651	발전기운용/정비	554*0	발전및변전	43-02	전기기관병
2533	발전기장비수리			43-44	
				46	시설병
				47	전공병

- 재직입증서류가 불충분하여 회사재직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입사/퇴사일자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입사 퇴사일자를 추정하여 인정한다.

-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였으나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1) 소득금액 / 당해연도 보통인부 일당 = 근무일수

2) 12월 31일을 기산하여 1)에서 산출된 근무일수를 역산하여 입사일 추정

※ 퇴사일의 경우 1월 1일을 기산하여 근무일수 경과일을 퇴사일로 추정

<년도별 보통인부 시중노임 단가>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19,166*	21,295*	23,661*	26,290*	27,218	31,866	34,947	37,736	33,75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34,360	37,483	40,922	50,683	52,374	52,585	55,252	57,820	60,547

- 가입기간이 일단위로 기재된 일용원 고용보험 가입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고용보험 가입확인서의 보험 가입일수 만큼 인정

- 다음에 해당하는 경력은 전기공사업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요령 제8조 및 별표 1 참조)

- 이중취업이 확인된 경력(이중취업이란 재직입증 서류 등에서 같은 기간에 서로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 전기공사업무이외의 경력으로 이미 확인된 경력

- 18세미만의 경력. 다만, 전기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수행한 경력은 제외한다.
- 주간학교 재학중의 경력(단, 휴학기간이 명시된 증빙자료를 첨부한 휴학중의 경력은 제외한다)
-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경미한 전기공사 시공 경력
- 선박·차량·항공기 등의 전기설비 시공경력
- 다른 업종의 기술능력으로 등록된 기간 동안의 경력

3. 참여사업 경력의 인정

가. 참여사업 경력의 인정 기준

- 참여사업 경력은 전기공사업체에서 수행한 시공관련 업무경력에 대하여 시공입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참여사업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참여사업 중 하나만 인정한다.
- 최초 참여사업 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받은 참여사업의 담당업무 및 참여사업명에 대하여는 추후 수정, 변경할 수 없다.

나. 처리기준

- 참여사업확인서(요령 별지 제8호서식)와 시공입증서류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공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명과 사업기간을 확인하여 시공증빙서류의 사업기간 내에서 참여사업기간을 인정한다.
 -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 전기공사실적증명서 사본
 - 전기공사계약보증서 또는 하자보수보증서 사본(공사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관계 법령에 의거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경력관리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참여사업기간이 명시된 것에 한한다)
 - 건축물관리대장(건축물관리대장에 시공사 또는 건축주가 기재되어 있고 시공사 또는 건축주가 참여사업 확인서를 발행한 경우에 한한다)
 - 자가공사일 경우 감리업체 또는 감리자 확인 서류
 - 기타 재직회사가 해당 전기공사를 수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다른 법령에 의거 정부로부터 경력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단체가 발행한 전기공사관련 경력증명서를 시공입증서류로 제출한 경우 참여사업확인서의 시공사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생략하더라도 참여사업을 인정할 수 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발주자가 확인한 참여사업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해당업체의 공사실적을 참여사업으로 제출하는 경우(단, 실적보존기간 경과로 인한 시공업체의 실적확인여부가 불가능할 경우 발주기관 및 시공업체의 확인을 필한 서류에 도급계약서 사본과 준공필증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에 는 시공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하더라도 참여사업을 인정할 수 있다

4. 전기공사업무 경력의 변경인정

가. 구비서류

- 전기공사업무변경인정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4서식)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전기공사업무경력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 및 재직증빙서류
- 학위증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 참여사업 확인서(요령 별지 제8호서식) 및 증빙서류
- 재직회사의 해당사업 등록증 사본(설계, 감리, 안전관리, 소방전기 등을 말하며 해당자에 한함)
- ※ 전기공사업무변경인정 신청서를 제외한 서류는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나. 처리기준

- 업무처리는 전 2호 및 전 3호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전기공사업무경력이 추가되어 기술자의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양성교육 훈련 이수여부를 확인하고 사진1매와, 경력수첩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상위등급의 기술자경력수첩을 발급한다. 다만, 전기관련 기술사자격 또는 전기관련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5. 서류의 보완

- 경력신청서의 접수 및 경력 심사시 제출해야 될 서류가 누락되거나 기재하여야 될 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즉시보완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사항을 경력관리시스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보완통지의 방법은 즉시보완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알리고 지체없이 우편물 수령지로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보완기간은 15일 이내로 하여 통지한다.
- 보완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완되지 않는 경우 보완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하고 심사한다.

6. 경력수첩 발급(재발급)

가. 경력수첩의 발급대상

- 전기공사기술자 인정(변경)신청에 의거 기술자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한다.

나. 경력수첩 발급번호의 부여

- 경력수첩은 다음과 같은 체계로 코드화 하여 발급한다.

□□ - □□□□ - □□□□□□
A B C D

A		B		C	D
코드	코드명칭	코드	코드명칭		
A	특급기술자	1	기술사	발급년도	일련번호
		2	기능장		
B	고급기술자	3	전기공사기사		
		4	전기공사산업기사		
		5	전기기능사		
C	중급기술자	6	유사자격자		
		7	기능사보		
		8	학·경력자		
D	초급기술자	9	경력자		
		S	유사학력자		
		Z	전기관련자격		

다. 처리기준

- 신규로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의 경우 양성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 경력변경신청에 의해 기술자의 등급의 변경이 있는 경우 양성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전기관련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 취득으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경력의 심사가 완료되는 경우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고 경력수첩과 본인확인용 경력증명서(직인날인은 생략)를 발급한다.
- 발급된 경력수첩 및 본인확인용 경력증명서(직인날인은 생략)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수령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
- 경력수첩 및 본인확인용 경력증명서를 교부하는 경우 수령인을 경력관리 시스템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우편발송의 경우 등기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 경력수첩의 재교부인 경우도 위와 같다. 다만, 본인확인용 경력증명서를 제외한다.

7. 이의·정정신청의 처리

가. 이의정정신청 안내

- 이의정정신청서는 신청서 수리일(경력수첩 교부일 또는 경력변경인정신청서 처리결과 문자메세지 전송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다.
- 경력인정신청서 또는 변경인정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정정신청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 발급 받아 사용한 경력기술자 경력확인서는 반환토록 하는 내용을 같이 안내한다.

나. 이의정정신청 처리기준

- 협회의 단순한 행정착오 또는 오기 등으로 이의정정신청이 정당한 경우 직권으로 정정한다.
- 위 직권정정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경력관리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통해 정정여부를 결정한다.
- 이의정정신청서의 처리가 완료된 경우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한다.

8. 제증명서의 발급

- 증명서발급 종류 및 발급처리기간
 - 전기공사기술자 경력확인서 : 즉시
 - 전기공사기술자 보유증명서 : 즉시
- ※ 경력인정(변경)신청과 동시에 제증명을 요구하는 경우 경력인정(변경)신청서의 처리기간은 별도로 한다.
- 경력인정을 신청한 자가 경력부족 등의 사유로 기술자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신청이 있는 경우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9. 경력수첩의 취소 등

가. 취소사유

- 부정한 방법으로 경력수첩을 발급 받거나 기술자가 사망한 경우

나. 취소절차

- 부정한 방법으로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았음을 증빙하는 관계자료를 수집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이유와 청문시기를 정하여 해당 기술자에게 통지한다.
 - 청문을 통지하는 경우 청문시기는 통지일부터 10일 이상을 주어야 하고 서면으로 의견제출이 가능하다는 것과 서면회신 또는 청문에 불참하는 경우 청문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청문결과 허위 발급사실을 부정하는 경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수사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 사망 또는 이민자의 경우
 - 매년 4월말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에 주민등록자료를 조회하여 사망자·이민자 등에 대하여 경력수첩 취소 또는 경력수첩의 정지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조회결과 사망자의 경우에는 사망일자를 기준으로 경력수첩을 취소하고, 이민자의 경우에는 이민일자를 기준으로 경력수첩자격정지처분을 한다.
 - 이민자가 국내거소증명서등을 제출하여 국내에서 취업하는 경우 그 정지를 해지할 수 있다.
 - 사망자의 경우, 그 가족 또는 이해관계인이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증빙에 의거 경력수첩을 취소하고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한다.

10. 자료의 보관

- 기술자 경력인정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는 개인별로 구분 정리하여 영구 보존한다. 단, 제출된 서류를 이미지파일로 스캔하여 경력시스템에 저장 관리하는 경우 서류는 폐기할 수 있다.
- 보존문서는 전자문서화하여 경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개인별로 열람 가능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1. 수수료

- 전기공사기술자 경력관련 제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수수료
1.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인정	40,000
2.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변경인정	5,000
3.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의 발급	10,000
4.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재발급	5,000
5.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	140,000
6. 제증명의 발급	건당 5,000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별표 3 참조)

[별표 1]

전기관련 학과목

NO	학 과 목	구 분	NO	학 과 목	구 분
1	계측및 선서(제어)공학(응용)	제어	43	전기물성	이론
2	고전압 공학	이론	44	전기법규	이론
3	광전기공학	제어	45	전기설계	설계
4	교류(여자)기기	이론	46	전기설계(CAD) 실습	실험
5	기초 초전도 공학	이론	47	전기설비	이론
6	기초백터 해석	이론	48	전기설비 공학	이론
7	논리회로(실험,설계)	설계	49	전기응용	이론
8	대체 에너지공학	에너지	50	전기재료및 소자	실험
9	디지털 공학(회로)실험	실험	51	전기재료및 제어실험	실험
10	디지털신호(영상)처리	디지털	52	전기철도	이론
11	디지털회로(멀티미디어)	디지털	53	전기회로(망)이론(해석)	이론
12	레이저 공학	이론	54	전기회로실험	실험
13	마이크로 컴퓨터 실험	실험	55	전동기(력)제어공학및 응용	제어
14	마이크로 프로세서(실습)	실험	56	전력(실험)	실험
15	반도체소자	이론	57	전력계통(실험)	실험
16	발변전 공학	이론	58	전력계통제어	제어
17	방전공학	이론	59	전력공학	이론
18	배전자동화	이론	60	전력발생(응용)	이론
19	산업전력 시스템	이론	61	전력변환기응용	이론
20	송배전 공학	이론	62	전력시스템 공학(운영)	이론
21	수치해석및 실습	실험	63	전력시스템 실험	실험
22	시스템시물레이션및 실습	실험	64	전력시장및 경제이론	이론
23	신재생분산전원	이론	65	전력전송 공학	이론
24	신호및 시스템	이론	66	전력IT	이론
25	아날로그 시스템설계	설계	67	전자기학	이론
26	양자역학의 기초	기타	68	전자장(이론)	이론
27	에너지(변환)공학	에너지	69	전자회로	이론
28	에너지관리 시스템	에너지	70	전철공학	이론
29	임베디드시스템	이론	71	제어공학(시스템)	제어
30	자동제어	제어	72	제어론	이론
31	자동화 설계	설계	73	조명공학	이론
32	전기(기기) 제어	제어	74	지능제어	제어
33	전기(전력)기기실험	실험	75	직류기기	이론
34	전기(제어)실험	실험	76	초고주파 공학	이론
35	전기공학 개론	이론	77	초전도공학	이론
36	전기공학설계 프로젝트	이론	78	플라즈마공학	이론
37	전기공학실험	실험	79	현장실습	실습
38	전기관련 졸업작품	기타	80	환경전자 공학(EMC)	기타
39	전기기계	이론	81	회로망합성및 실험	실험
40	전기기기	이론	82	Chaos공학	제어
41	전기기기(최적)설계	설계	83	PLC프로그래밍(시퀀스)	이론
42	전기기초 실험	실험	84	Puzzy공학	제어

[별표 2]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번호	국가명	번호	국가명	번호	국가명
1	알바니아	32	모나코	63	브루나이왕국
2	아르헨티나	33	네덜란드	64	콜롬비아
3	오스트레일리아	34	뉴질랜드	65	쿠크제도
4	오스트리아	35	노르웨이	66	도미니카
5	벨라루스	36	파나마	67	에콰도르
6	벨기에	37	폴란드	68	엘살바도르
7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38	포르투갈	69	피지
8	불가리아	39	루마니아	70	그레나다
9	중국의 홍콩,마카오	40	러시아공화국	71	온드라스
10	크로아티아	41	세르비아	72	인도
11	사이프러스	42	슬로바키아	73	카자흐스탄
12	체코공화국	43	슬로베니아	74	레소토
13	덴마크	44	남아프리카공화국	75	라이베리아
14	에스토니아	45	스페인	76	리히텐슈타인
15	핀란드	46	수리남	77	말라위
16	프랑스	47	스웨덴	78	마르셀제도
17	그루지아	48	스위스	79	마우리티우스
18	독일	49	마케도니아공화국	80	몰도바공화국
19	그리스	50	터키	81	몬테네그로
20	헝가리	51	우크라이나	82	나미비아
21	아이슬랜드	52	영국/북아일랜드	83	니우
22	아일랜드	53	미국	84	세인트키츠네비스
23	이탈리아	54	베네슈엘라	85	세인트루시아
24	이스라엘	55	안도라	86	세인트빈센트그레다닌
25	일본	56	안티카&바부다	87	사모아
26	한국	57	아르메니아	88	산마리노
27	라트비아	58	아제르바이잔	89	세이셸
28	리투아니아	59	바하마	90	스와질랜드
29	룩셈부르크	60	바바도스	91	통가
30	몰타	61	벨리즈	92	트리니다드&토바고
31	멕시코	62	보스니아		